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 관계 기관(관내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조항 신설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 안 제6조에 지원내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내용에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수거장의 환경 정비 및 미관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에 따르면 폐지 수집인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간 폐지를 주으면 한 달에 약 159,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당 수입이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의 수준임. 또한 폐지수집 활동의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은 약 60명이며, 2023년 우리 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 조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유승용, 신흥식, 남완현
이성수 의원(4인)

1. 제안이유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 나. 관계 기관(관내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조항 신설
-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9.~ 2. 13.)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를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집하는”을 “수집하여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청장의 책무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을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중”을 “각 호의”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이나 다른”을 “다른 법령이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활용품</u>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u>자원재활용</u>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재활용품</u>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u>행정적인 지원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u>주민복지 증진</u> 및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u>수집하는</u> 사람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수집하여 판매하는</u> ---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구청장은 <u>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u> 등을 위하여 <u>교육</u>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신설></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u>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u></p>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① -----

----- 각 호의 -----
-----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 -----

3.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7조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내용) -----

----- 다른 법령
이나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